

은빛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019.04.24 제정

제1차 개정: 2020.12.04.

제2차 개정: 2021.07.13.

제3차 개정: 2021.12.28.

제4차 개정: 2022.07.11.

제5차 개정: 2023.02.17.

제6차 개정: 2023.12.18.

제7차 개정: 2024.04.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은빛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규정은 은빛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생중심의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창출, 정착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꿈이 빛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제3조【용어의 정의】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 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 6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교육부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5조【방침】

① 초·중등 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본교에서는 체벌을 금지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침해할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실시 한다.

④ 학생 생활인권교육 지도와 관련된 학생고충처리 및 학생 징계를 위한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를 운영한다.

⑤ 학생 자치회 및 학급 자치회를 통하여 바른 생활 실천의지를 다진다.

⑥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생활 태도를 위한 인성 및 정신 교육을 활성화한다.

⑦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으로 학생지도에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참여하게 한다.

⑧ 학생은 자치활동의 권리를 가지며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 【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이고 진지한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규범을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신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생활 및 소지품 검사】

- ①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③ 학생은 교과 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흡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⑤ 학생이 소지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흡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

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⑧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제11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등하교】 학생의 등하교 관련 내용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등교 시각은 09:00까지로 한다.
- ② 학생의 등하교는 정해진 통학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의 통학 방법은 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형편상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나,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은 학부모가 진다.

제13조【양성 평등】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③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선블록, 비비크림, 입술보호용 텐트 등)을 할 수 있다. 단,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2절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은빛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여행에 유의한다.
- ②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각종 교외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⑤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17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 ①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정보통신

제18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및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⑥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둔다.
- ⑦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⑤ 음란·폭력 유해사이트의 접속 및 불법·유해 매체의 학교 반입과 배포를 금지한다.

제20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휴대폰은 개인이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② 수업 중 스마트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④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 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⑥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발생 시 조치

제21조【교권으로부터의 학생 인권 보호】

- ① 학교관리자는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발생 시 그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 ② 학생인권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22조【조치방법】

- ① 인권 침해 발생 시 학생은 교감에게 직접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알린다.
- ②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체벌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생과 교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다.

- ③ 교감은 교사와 학생 간 중재를 유도하며, 중재과정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문제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적 분위기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제3장 인권 친화적 회복적 교육

제23조【학생지도방법】 체벌은 금지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24조【본교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의 원칙】

- ①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여 학교구성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②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 시 대상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은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 방법에 한한다.

제25조【단계별 지도】 단계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지도과정을 상담록 등으로 기록한다.

① 1단계 : 훈계

생활규정에 어긋난 행동,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 등에 대해 훈계한다.

② 2단계 : 담임상담

훈계가 반복될 경우 담임과 상담하며, 필요에 따라 소감문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3단계 : 학부모 상담

담임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한다.

④ 4단계 : 특별실(상담실 등)지도

학부모 상담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특별실(상담실 등)에서 관리자나 상담전문가 등이 해당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⑤ 5단계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특별실 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제26조【생활.인권교육 대상 행동】 생활.인권 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 선정은 다음의 각 항을 기준으로 한다.

- ①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 ② 수업 시간 중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
- ③ 학교생활 중 타인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동
- ④ 기본규칙 및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
- ⑤ 학습과제 불이행, 준비물 미지참 등 학습이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
- ⑥ 학생 스스로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행동
- ⑦ 사이버범죄행동(무단촬영, 인터넷 게시 및 유포, 비방문자, 비방글 등)
- ⑧ 고의적인 학교 기물 및 개인 용품 파손·절도 행동

제27조【학생생활·인권교육 프로그램】 학생교육활동 수행 시 생활인권 교육대상 학생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교육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행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에서 뛰거나 떠들, 줄서서 차례를 지키지 않음, 실내-실외화 구분하여 신지 않음, 침 함부로 뱉음, 지각 및 수업이탈, 학습 과제를 하지 않음,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음, 군것질을 하고 쓰레기를 버림 등 기본적인 타인 배려를 하지 않거나 본인의 학습 수행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사이버범죄행동(무단촬영, 인터넷 게시 및 유포, 비방문자, 비방글 등), 흡연, 음란물을 봄, 라이터, 성냥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옴, 내기 게임을 함, 수업에 방해되는 언행, 학교 물건 파손, 학교에서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 선생님께 불손한 언행 등 본인의 인성 발달 측면에서 위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 · 돈 · 물건 뺏거나 훔침, 친구 때리거나 괴롭힘, 집단폭행 · 집단 따돌림 등 본인의 인성 발달 측면에서 심각한 위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전체 학생들에게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

☞ 학부모 상담은 담임이 판단한 행위 내용 경중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적절히 실시하며 학부모상담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 상담을 실시한다.

제2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장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학생자치회 조직 및 기능 등 규정 임의】 제29조 ~ 제38조 적용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당해연도 ‘학생자치회 규정’을 우선하며 그에 따라 운영하도록 정한다.>

제29조【명칭】 이 회는 ‘은빛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30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데 있다.

제31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학생자치회는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학생총회로 구성한다.

제32조【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33조【학생총회】

-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 ② 학생총회는 학생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자치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①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 ②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 ③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 ④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 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 ⑥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예산

제35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회 규정’에 따라 임명한다.

제36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임무를 계획·운영한다.

제37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은 ‘학생자치회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38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본인의 의사 및 경우에 따라 학교장의 지명으로 지정한다.
-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진로인성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09.01.)

제1절 총칙

제39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41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 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 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 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2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43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44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45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46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47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8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50조【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제50조제6항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및 실외 교육활동 시 지정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지정 위치(체육관 및 실외 교육활동 시 지정된 위치나 좌석에서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선 상태로 분리)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최대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2호 각 2회씩 총 4회 조언 분리) 주의 후 지도하였음에도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3호 지도)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수업 종료 시까지 분리 후 복귀(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	
	가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앞 각호에 대한 자시 불이행 교사에 대한 폭언	교무실 지정 장소 (학습지원 완료 후 해당 교시 종료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전담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교무실 관리인원 부재 시 전담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학생 관리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나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지정 장소 (학습지원 완료 후 해당 교시 종료까지) 부재 시 교무실 지정 장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전담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교장실 관리인원 부재 시 교무실 분리, 교무실 관리인원 부재 시 전담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교무실에서 학생 관리	관리자 면담 및 행동성찰문 작성
	다 ① 3-'가','나'호에 대한 지시 불이행 '나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교사에 대한 폭행 및 성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교무실 분리 후 학부모 인계	①, ②호 요건을 포함하며, 3호 가,나를 누적하여 1일 2회 지도 받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 및 가정생활지도를 요청함. (고시 제12조제7항)	행동성찰문 및 학부모의견서 첨부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교폭력 및 성관련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정규수업 종료 후 교무실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작성
기타	<p>※ 교무실 분리 인원이 밀집될 경우 사안의 경종에 따라 분리가 제한될 수 있음.</p> <p>(1순위: 고학년(6학년) → 2순위: 신규교사 학급 → 3순위: 문제행동에 대해 교무실에서 인지하고 있는 학생 → 4순위: 분리 요청 학생)</p> <p>※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항 :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 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p>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5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제50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및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 (전자기기의 경우 등교 후 전원을 끄는 것을 의무화)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p>※ 분리보관 지시 불이행 시 '교실 밖 분리'의 3-가호 적용 (물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교무실 지정 장소에 보관)</p>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커터칼 포함),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p>※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관리함</p>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가 일지 확인 후 수령 <p>※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녹음이 가능한 기기 및 앱, 음란물 등			
기타				<p>※ 제11조(주의)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p> <p>※ 학급에서 물품을 분리할 경우 담임교사가 물품분리보관 일지 작성 / 교무실에서 물품을 분리할 경우 교무실에서 물품분리보관 일지 작성</p>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

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1조【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5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절 기타

제5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

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56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58조【기타사항】 이 개정은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을 우선한다.

제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9조【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0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61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제6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학생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④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 ⑤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⑥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64조【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65조【징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특별교육 이수
 - 3.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66조【학생생활교육의 방법】 학생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특별교육 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종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돋운다.
4.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돋운다.

제67조 【학생생활교육의 기준】 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학생생활 교육기준		
		교내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미인정 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흉기를 휴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1	흉기를 휴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4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5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6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6-1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6-2	수업시간 외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7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8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9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1	동일 건으로 3회 이상 지시 불이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2	교권을 침해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2-1	욕설이나 위협, 교사가 느끼기에 불손한 행동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2-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4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5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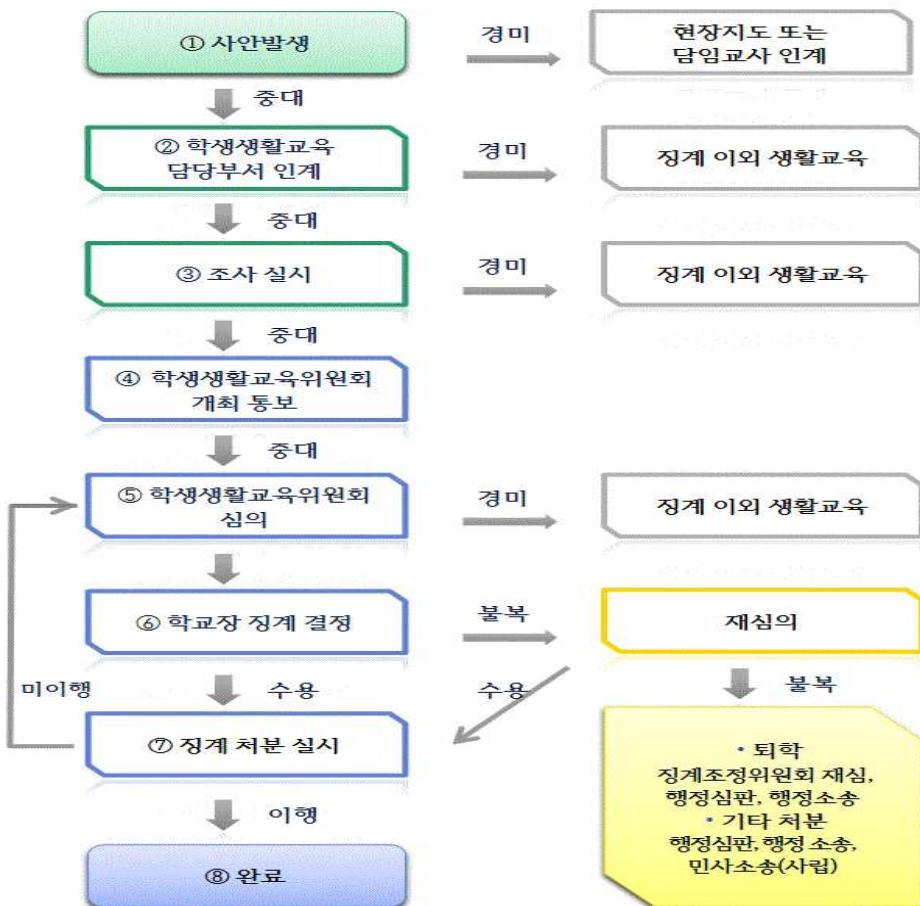
제68조 【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되, 서면

수취를 거부하거나 서면 통보가 불가한 경우 기타 통신가능 수단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결정통지 시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소집될 때 사전에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학생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다.



제70조 【재심의】

-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③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71조【재심의 절차】

단계	내용
이의신청 및 재심의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제기의 내용이 학교 내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 학교장은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때 학교는 이의신청서에 '학교 내 재심의 청구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 필요
재심의 여부 논의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재심의 여부를 검토·결정○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위원회 재심의 회부를 학교장 결재로 결정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의견을 가급적 재청취 필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당사자 통보 → 학생생활교육 시행

제72조【학생생활교육 내용의 통보】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73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 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75조【개정원칙】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7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③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⑤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교원 대표는 업무의 순환·학생 대표는 학년의 순환 주기를 고려하여 1년을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7조【구성 방법】

- ①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79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0조【검토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학생은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등), 설문조사, 토론회 등 학부모는 학부모회,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모니터링단 활동 등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제81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2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83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85조【개정절차】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24일 심의확정 후 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은빛초등학교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2조 (책무)

-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장애학생의 인권

제3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 (교육에 관한 권리)

-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권교육

제7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24일 심의확정 후 제정 시행한다.